# 16 •• 반도체공정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경화증

성별	여성	나이	25세	직종	반도체제조	직업관련성	쟁점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## 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□사업장에 2003년 2월에 입사하여 2005년 2월 퇴사할 때까지 카파라인공정 오퍼레이터로 만 2년 근무하였다. 퇴사 후 2005년 3월 중순경부터 눈이 침침해지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을 시작으로 여러 증상들이 수반되다가 2007년 8월경 본격적으로 다발성경화증의 증상이 나타났고, 2008년 7월 대학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 확진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중이다.

#### 2 작업환경

2003년 2월부터 2004년 초까지는 주업무로 CMP공정과 Clean 공정을 담당했고 보조업무로는 CVD와 Etching을 담당했다. 2004년 초부터 2005년 초 퇴사하기 전까지 주업무로 Photo 공정을 하였고 보조 업무로 전 공정 검사업무(SAM, SCOPE)를 하였다.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로 슬러리 용액(실리카, 암모니아수), 감광용액(PR, solvent-based polymer), 신나, 불화수소, 황산 등이 있었다.

# 3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의 과거력 및 직업력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. 2005년 3월부터 시력이 나빠지는 것 같았고, 2008년 6월 왼쪽 팔, 다리에 감각저하, 위약감이 있었고 우측 팔, 다리에는 근력저하, 통증이 생겼고 동시에 좌측 안면마비, 말 어눌함이 생겼다가 7월에 증상이 더욱 심해져 대학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 확진 받고 치료 중이다.

## 4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에게서 발생한 다발성경화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 가지 의견 으로 나뉘어졌다.

- 업무관련성 있음 : 신청상병과 직업적요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부족하나 희귀질환이라는 점, 현재까지의 메타분석결과 및 유기용제 노출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고려.

- 업무관련성 낮음: 비록 신청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기용제노출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빈도와 양을 확인할 수 없고, 유기용제의 인체영향을 가중시킬 만한 작업조건이 아니기 때문임.
- **업무관련성 판단불가** : 근무기간이 2년정도이고, 타 연구에서는 금속 및 유 기용제등과 신청상병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함.
- 역학적 연구필요 : 메타분석결과 유기용제로 인한 상대위험도결과가 의미있 게 도출되었으므로 발병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.